2022~2024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University Regulatory Reform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2~2024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University Regulatory Reform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Sookmyung Institute of Global Governance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목차 Contents

Ⅰ 대학 규제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 04

1. 추진 배경 ····· 06

2. 추진 경과 ····· 06

Ⅱ 대학 규제개혁 추진 성과 ····· 10

Ⅲ 대학 적용 현황 ····· 22

1. 주요 규제개혁 과제 ····· 24

2.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적용 현황 ····· 27

가. 교원 ····· 27

나. 학사 ····· 30

다. 정원 ····· 36

라. 설립 · 운영 ····· 42

마. 재정 · 회계 ····· 45

바. 산학 · 첨단 ····· 49

사. 평생교육 ····· 53

아. 글로벌교육 ····· 56

Ⅳ 향후 과제 ····· 60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Ⅰ.

대학 규제개혁의 추진 배경 및 경과

Ⅰ. 대학 규제개혁의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대학 규제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의 혁신적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임.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간 고등교육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출산·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은 각자의 고유한 여건에 맞춘 전략적 특성화와 자율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음.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더욱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대학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안팎의 벽이 되는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대학을 옭아맨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현장의 개선 요구가 컸던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학교와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해 왔음

2. 추진 경과

- 대학의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세부 추진 목표는 첫째, 대학의 자율성 확대로서,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혁신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둘째,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셋째, 대학, 학생, 산업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실현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하에 정부는 대학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마련하였고, 각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각 계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음. 이와 함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정부 주도의 평가를 폐지하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평가를 시행하는 평가체계로 개편하였음

• 지난 2년여간 25개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총 108건의 규제를 개선(2024년 12월 기준)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학개혁을 위하여 규제 중심의 고등교육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대학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혁신적인 사례들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음

가. 추진체계, 전담조직 신설

• 정부는 대학 규제개혁이 「정책 수립 – 현장 의견 수렴 – 제도 개선 – 실행 및 점검」의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1) 대학규제혁신국 신설

• 교육부는 2023년 1월 대학규제혁신 전담 조직인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하였음. '대학의 자율과 혁신지원'을 대학규제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 혁신 정책 추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대학규제혁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음

• 대학규제혁신국은 학사, 정원, 설립·운영, 재정·회계 등 분야별로 현장 수요가 큰 규제를 발굴·개선하였음. 특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자율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사 분야 규제를 다수 해소하였음. 2024년 1월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으로 재편하여 글로컬대학 등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발굴 체계 운영 및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안 마련 등 규제혁신을 총괄 추진함

2) 대학규제개혁협의회 구성·운영

• 대학의 변화를 지원하고자 현장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산업계,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이를 통해 대학 규제혁신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음

• 대학규제개혁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연 6회 이상 규제 안건을 논의하고, 대학·교육계(일반대·전문대 교수, 직원, 학생 등),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함

– 1기 협의회: 위원장 포함 18인으로 구성, 1차(2022.9.28.)부터 17차 협의회(2024.8.30.) 개최

– 2기 협의회: 학생 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여 2기 협의회 구성, 18차 협의회(2024.12.19.)부터 격월로 운영 중

– 2025. 6월까지 총 21회 회의를 운영하여 글로컬 대학 건의 과제,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비계획(안),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방향 등 주요 핵심 규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음

| 대학규제개혁협의회 2기 위원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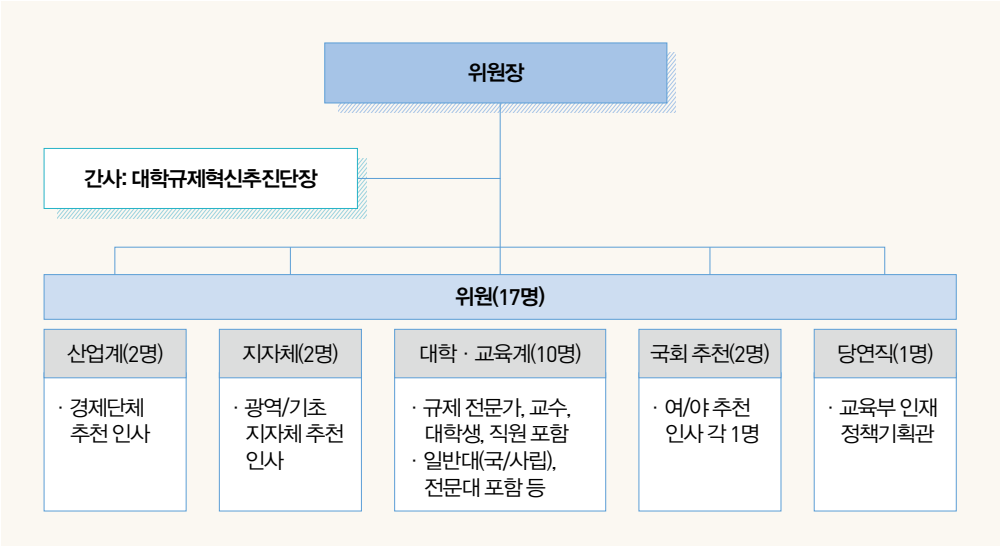

나. 평가체계 개편

-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평가를 폐지하고 대학 평가체계를 개편하였음. 그간 교육부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교육부는 2023년 3월 '대학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평가로 대체함
-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 및 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일반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대학을 결정하도록 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음

다. 각종 규제 개선 및 제도화

-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학사·정원, 교원, 설립·운영, 재정 등 각 분야별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컸던 규제를 대폭 개선해 옴. 2024년 12월까지 25개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108건의 규제를 개선하며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음
- 대학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유로운 교육 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함. 대학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캠퍼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소재지 외 다른 곳에서 수업의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의 교사(校舍) 요건을 폐지하였고, 국립대학의 교육시설을 본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대학의 경직적인 학사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없애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였음. 소단위 전공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학부의 정원조정을 자율화하고, 첨단 분야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화함

-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자율적인 교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겸임·초빙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교원의 매주 교수시간 9시간 원칙 규제도 폐지하여 자율운영 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라. 글로컬 규제 개선

-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방식의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한 규제개혁도 추진하고 있음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기본 4년에 추가 2년,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특례 제도로, 지방대학육성법 제22조 내지 24조를 근거로 고등교육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운영함
- 주요 사례로는,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을 통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특례 적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여 산업계 전문가 영입이 가능해졌으며, 대학이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광역지자체 기준)하여 성인학습자의 재교육과 평생교육 수요 등에 대응하도록 지원함
- 글로컬 대학은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 규제특례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으로 확대 적용되는 법령·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됨

마.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보다 근본적인 대학개혁을 위해서 규제 중심의 「고등교육법」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개편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평은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음
- 개정안은 학사 자율화, 통합대학 운영, 산–학–연 협력 촉진 및 평생교육의 확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학사와 관련하여 법률상 공통으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남기고 학사 운영 시 적용되는 기준도 학교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장(章) 신설로 지역과 대학의 상호협력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고등교육법개정안 마련 정책연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하고, 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10월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같은 해 12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현재 계류 중임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II.

대학 규제개혁 추진 성과

Ⅱ. 대학 규제개혁 추진 성과

- 교육부는 대학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대학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운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25개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한 108건의 규제를 개선(2024년 12월 기준) 하였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혁신적 사례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 옴

| 최근 규제개선 내용(2024년 12월 기준, 108건) |

분야		개선내용	비고
1	평생교육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 허용 – 종전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만 설치가능했으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도 가능하게 함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 (2022.10.18.)
2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허용 – 2년제 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이버대학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가능	고등교육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2022.10.18.)
3	평생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내대학의 위탁·운영 허용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대학 등에 위탁 운영 가능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2023.4.18.)
4	학사·정원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30%) 2028년까지 연장 – 의료 현장의 간호사 인력 부족 상황 고려, 학사 편입학 비율(30%)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2023.4.18.)
5	학사·정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원칙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024.2.20.)
6	학사·정원	대학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 향상(학교의 조직) –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24.2.20.)
7	학사·정원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과정 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신설 (2023.4.18.)
8	학사·정원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 종전 두 대학간 공동 운영에서 둘 이상의 대학간 공동으로 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024.2.20.)

분야		개선내용	비고
9	학사 · 정원 (글로벌교육)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 종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학이 자율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2024.2.20.)
10	학사 · 정원	산업체 · 연구기관 등 학교 밖 기관에서 협동수업 허용 –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동수업 가능케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신설 (2024.2.20.)
11	학사 · 정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련 학점인정의 범위 · 기준의 대학 자율화 –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종전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대학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 범위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2024.2.20.)
12	학사 · 정원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 예비군 훈련 동안 결석 처리하지 않고, 수업 보충 실시, 그 외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신설 (2024.2.20.)
13	학사 · 정원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 종전에는 학생이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학칙에 따라 전공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024.2.20.)
14	학사 · 정원	경영등 관련 대학원 종류(경영, 금융, 물류)의 세부 구분 폐지 – 세분화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실익이 낮아, 대학 자율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 (2024.2.20.)
15	학사 · 정원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 운영 – 의학계열(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예과 2년과 본과 4년 구분 운영을 6년의 수업연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024.2.20.)
16	학사 · 정원	전학년 전과 가능(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 종전 2학년 이상의 학생만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하던 것을 학생의 학년 제한을 삭제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4.2.20.)
17	학사 · 정원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 – 심사위원 수(종전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 이상)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024.2.20.)
18	평생교육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확대(10%→30%) – 종전 10%에서 30% 범위에서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2024.2.20.)
19	평생교육	원격대학에게 시간제등록생만 수업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허용 – 종전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었으나,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받는 경우에도 시간제등록생을 선발 가능케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제8항 (2022.9.6.)
20	평생교육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 – 종전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에서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2024.2.20.)
21	평생교육	산업체 위탁교육의 범위를 석 · 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 – 종전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 · 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2024.2.20.)

분야		개선내용	비고
22	전문대학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등 대학 자율성 제고 –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종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종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로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및 제58조의3 제1항 (2024.2.20.)
23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평가 업무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 학교 협의체 위탁을 통해 대학 자율성 제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6 제6항 신설 (2024.2.20.)
24	평생교육	사이버대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운영계획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신설 (2023.4.18.)
25	평생교육	사이버대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 –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종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3항 (2024.2.20.)
26	평생교육	비수도권 전문대 성인학습자 정원외 입학정원 제한 폐지 –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 성인학습자를 정원외 입학정원(5%)으로 모집하는 제한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제6호 삭제 (2024.2.20.)
27	학사 · 정원 (글로벌교육)	외국인 유학생 · 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할 경우 자기소개서 활용 가능 –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제41조 제3항 신설 (2024.7.9.)
28	설립 · 운영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학과등 자율성) – 국립대학에 학과 · 학부 외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학과등)을 둘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제2항 (2024.3.12.)
29	설립 · 운영	국립대학이 소재지 외에 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토록 허용 – 교육 ·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대학설립 · 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소재지 외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 제2항 (2023.11.16.)
30	설립 · 운영	국립대학 간 통 · 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 신설 – 국립대학 통 · 폐합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름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신설 (2023.11.16.)
31	설립 · 운영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대학원대학 등의 설립(캠퍼스이전) 요건 완화 – 대학이 혁신도시내 산학연클러스터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원을 두는 경우 해당 교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 허용 – 대학이 그 일부를 클러스터로 이동시키는 경우 교사 또는 교지가 설립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2조의7 제1항 (2022.8.9.)
32	학사 · 정원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의 교원 확보 기준 완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 학과 · 정원 등을 증설 · 증원하거나 자체조정하는 경우 교원 확보 기준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및 제4항(2022.8.9.)
33	학사 · 정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위과정간 입학정원 상호조정의 유연화 – 종전 학사 입학정원 1.5명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1명 증원에서 1:1 비율로 개선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 감축에서 1명 감축으로 동일하게 조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및 【별표1의6】 제1호, 제3호(2022.8.9.)

분야		개선내용	비고
34	설립 · 운영	여러 위치에 있는 교지를 하나의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 – 단일 교지 인정 범위 확대(2km→20km) 및 동일 시군구내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교지로 보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4항 (2022.8.9.)
35	설립 · 운영	전문대학원 신설 시 전용 교사시설 및 교원 확보요건 폐지 – 다른 학부 또는 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 (2023.9.19.)
36	설립 · 운영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학칙 규율 – 종전 인문사회계열 최근 5년간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4편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4항 (2023.9.19.)
37	설립 · 운영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의 요건 완화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분야(대학원 및 대학)의 학과.정원 등을 증설.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 기준과 교육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2023.1.10.)
38	설립 · 운영	대학 통 · 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폐지 – 대학–전문대학의 대학으로 통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감축 등 통폐합 6개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 기준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단서 및 【별표1의3】 삭제 (2023.9.19.)
39	설립 · 운영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과증설(정원증원) 요건 완화 – 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인력양성 또는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대학원에서 대학까지 확대)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학과증설(학생정원증원) 하는 경우, 교원 확보 요건 완화(겸 · 초빙 비율 1/5→1/3 적용, 국립대는 교원 수의 70% 확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2023.9.19.)
40	설립 · 운영	국립대학 대학원의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 관련 교원 확보 요건 완화 – 교원 확보 요건을 70%로 완화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2023.1.10.)
41	설립 · 운영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 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삭제 (2023.1.10.)
42	설립 · 운영	국립대학의 해기사등 특정분야인력 양성관련 교원 확보비율 완화 – 종전 80% 교원 확보 비율을 70%로 완화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7항 (2023.1.10.)
43	설립 · 운영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학과 증설, 학생 정원증원하는 경우 4대 요건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신설 (2024.4.30.)
44	학사 · 정원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 종전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6항 후단 삭제 (2024.4.30.)
45	학사 · 정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 종전 석사:박사 2:1 감축(증원) 비율을 1:1로 개선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 제3호 및 제4호 (2024.4.30.)

분야		개선내용	비고
46	학사 · 정원	학부–대학원 간 학생 정원 상호조정 요건 폐지 – 종전 학부생 충원율(90% 이상) 등의 상호조정 요건을 폐지하고, 상호조정을 희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제1호 (2023.9.19.)
47	설립 · 운영	대학의 통 · 폐합 유형 확대 – 대학이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도 통 · 폐합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4 제1항 (2023.9.19.)
48	설립 · 운영	경영 등 관련 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폐지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5 삭제 (2024.2.20.)
49	설립 · 운영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 요건 완화 – 운영중인 대학의 경우 종전 자연과학(17㎡), 공학 및 의학(20㎡), 예체능(19㎡)의 교사 기준 면적을 14㎡로 통일 완화함 (인문사회계열 12㎡ 및 편제미완성 대학은 종전 규정 유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3】 (2023.9.19.)
50	설립 · 운영	대학의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요건 폐지 – 대학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사 요건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9항 삭제 (2023.9.19.)
51	설립 · 운영	첨단산업분야 학과등을 대학의 소재지외 운영시, 교지 요건 폐지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 학과 등을 대학 소재지외 다른 위치에서 운영할 경우 교지 요건을 폐지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5항 삭제 (2023.9.19.)
52	설립 · 운영	대학의 교지 기준 면적 요건 완화 – 운영중인 대학은 종전 교지 기준 면적 요건(학생정원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확보)을 폐지함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4】 (2023.9.19.)
53	설립 · 운영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원 확보율 산정 기준 완화 – 종전 학사과정 학생정원의 2배의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학부 정원의 1.5배)으로 완화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2023.9.19.)
54	재정 · 회계	수익용 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 · 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 – 운영중인 대학에 대해 법인이 연간 등록금 · 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7항 신설 (2023.9.19.)
55	재정 · 회계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 · 교지 임차 사용 가능 – 교지 · 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이나, 추가로 교지 · 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 활용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신설 (2023.9.19.)
56	재정 · 회계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신설 (2023.9.19.)
57	설립 · 운영	캠퍼스 위치 변경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 대학이 새로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신규 캠퍼스 시설 여건만 갖추면 운영 가능 (개선 전: 기존 · 신규 캠퍼스 모두 갖출 것)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3항 신설 (2023.9.19.)

분야		개선내용	비고
58	학사 · 정원	주야간 학생 정원 조정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주야간 정원 조정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4항 제1호 신설 (2023.9.19.)
59	학사 · 정원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충족 필요 요건 완화 – 증원 캠퍼스가 교사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 또는 100% 이상 충족하면,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가능 (개선 전: 교지 확보율도 충족 필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4항제 2호 신설 (2023.9.19.)
60	교원	겸임 · 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1/5→1/3) – 일반대학의 겸임 · 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우수 전문인력 활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5항 신설 (2023.9.19.)
61	교원	재학생수 기준으로 교사 · 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 –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재학생 수를 바탕으로 교사 · 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함으로써 대학 부담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6항 신설 (2023.9.19.)
62	설립 · 운영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급별 법인 분리 허용 – 학교급별 법인 분리가 허용됨으로써, 기존 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별 재학생 규모에 따라 달리 분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8항 신설 (2023.9.19.)
63	재정 · 회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 · 증여 · 교환 등) 규제 완화 – 전문대학 학교법인도 기본재산 매도 등의 경우 신고 가능 대상에 포함 (개선 전: 대학 · 산업대학, 사이버대학만 가능)	사립학교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3호 (2023.6.13.)
64	재정 · 회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차입 · 융자) 규제 완화 – 사이버대학 · 전문대학 학교법인도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신고 가능 대상에 포함 (개선 전: 대학 · 산업대학만 가능) –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차입금 규모 관계없이 신고 가능(개선 전: 차입금 규모에 따른 신고 여부 결정)	사립학교 시행령 제11조 제5항 (2023.6.13.)
65	재정 · 회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무부담 · 권리포기) 규제 완화 – 사이버대학 · 전문대학 학교법인도 의무부담 · 권리포기 시 신고 가능 대상에 포함 (개선 전: 대학 · 산업대학만 가능)	사립학교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 (2023.6.13.)
66	재정 · 회계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이전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확대(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 연구시설 포함)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도 처분 가능	사립학교 시행령 제12조 제2항 (2023.6.13.)
67	재정 · 회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 – 종전 재산 처분, 권리 포기 신고 범위를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사립학교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 (2024.8.20.)
68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의 교원 확보 기준 완화 – 사이버대학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초빙교원도 포함하여 산정(개선 전: 교원, 겸임교원 포함)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2022.10.18.)
69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의 명칭 자유화 – 사이버대학의 명칭에 특정 단어(사이버, 디지털, 가상 등)의 의무적 사용 규정을 폐지함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제2조 (2022.10.18.)

분야		개선내용	비고
70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 후속으로 사이버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규정함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 (2024.5.21.)
71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신설에 관한 인가제도 폐지 – 사이버대학이 특수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3명 이상)을 충족한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없이 자율 설치 가능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별표1】 (2024.5.21.)
72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의 학과등에 조교 확보 의무 폐지 – 의무적 확보 조교 기준(1명 이상)에 관한 사항 폐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삭제(2024.5.21.)
73	평생교육	사이버대학을 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완화 –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종전 운영수익 총액의 50%에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 – 해당 가액의 2.8%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2024.5.21.)
74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허용 – 사이버대학의 장이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절차를 신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2조의2 신설 (2024.5.21.)
75	산학협력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 허용 –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 계약한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전: 학생이 하나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 (2023.3.28.)
76	산학협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의 학생정원 제한 완화 –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50/100으로 허용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2023.3.28.)
77	산학협력	산업체등이 부담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경비 부담 완화 – 비수도권 대학 첨단산업분야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종전 50/100 이상에서 50/100 미만으로 완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7항 (2023.3.28.)
78	산학협력	불가피한 사유 시 계약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허용 –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나 계약학과등의 개편 등이 수반되는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허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1항 신설 (2023.3.28.)
79	산학협력	학과·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분야 계약정원 운영 – 국가·지자체가 첨단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산업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이미 설치된 학과·학부 생의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정원으로 운영 가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신설 (2023.3.28.)
80	산학협력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2023.3.28.)

분야		개선내용	비고
8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한 사용 범위를 종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2023.3.28.)
82	설립 · 운영	학생정원별 교사기준면적 산정방식의 유연화 – 운영 중인 대학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학생정원 400명 미만인 경우의 산정방식을 신설함	대학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신설 (2024.3.21.)
83	재정 · 회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 방식 개선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할 때,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	대학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0조 (2024.3.21.)
84	설립 · 운영	유휴교사를 편익시설로 임대 허용 –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한 교사 중 유휴교사에 대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편익시설로 정함	대학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4조 신설 (2024.3.21.)
85	재정 · 회계	사학기관의 예 · 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 –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며, 실무적 회계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따른 특례 규칙 제6조, 제42조 (2023.6.1.)
86	학사 · 정원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의 운영 범위를 확대 –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국내 대학이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대상(학사 · 전문학사학위과정) 명확화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2022.9.29.)
87	학사 · 정원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사전승인 · 분야제한 폐지등) – 대학이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 (사전승인, 분야제한, 강의평가 공개 관련 규제 폐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및 제6조 삭제 (2023.12.5.)
88	학사 · 정원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절차 등 간소화 –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삭제 –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 박사학위 신고 절차를 간결하게 하여 합리성 제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삭제 및 제4조, 제5조 (2023.1.1.)
89	학사 · 정원	학교 밖 수업 운영 근거 마련 및 이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 학교 밖 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제정하며, 이동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승인제 폐지	학교 밖 수업 운영 기준 (교육부훈령) 제정 (2024.4.18.)
90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의 사후 변경 허용 – 대학의 장이 다음 해 위탁교육 실시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보고 한 후,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해 2월말까지 변경 가능 (개선 전: 실시계획 보고 후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음)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8조 (2024.1.1.)
91	산학협력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 첨단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함 – 그 외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대학의 소재지 기준으로 전국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전체(수도권 소재 대학)로 확대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규정 제2조 (2023.5.22.)

분야		개선내용	비고
92	산학협력	이동수업 운영관련 대학의 자율적 운영 허용(교육부 사전심의 폐지) – 이동수업을 자율 운영(학칙 운영)으로 허용하고, 졸업 학점 50%까지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규정 제19조, 제20조 (2023.5.22.)
93	설립 · 운영	통 · 폐합 시 대학의 조직 개편 기준 유연화 – 통 · 폐합 시 통합대학의 행정 · 학사조직 개편 기준을 개편하면서, 대학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4조, 제5조 (2024.3.14.)
94	설립 · 운영	국립–공립대학 간 통 · 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 –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간 통 · 폐합 시, 국립대학 간 통 · 폐합 시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 신설 (2024.3.14.)
95	설립 · 운영	국외분교 설립 시 교육부장관의 컨설팅 관련 조항 폐지 – 대학이 국외 교사시설을 취득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컨설팅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이 가능했으나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규제를 완화함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삭제 (2023.12.19.)
96	학사 · 정원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 공동교육과정 운영시 대학원 학과증설(정원증원) 허용 – 대학이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면서,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총 입학정원증원 가능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정 (2022.10.17.)
97	재정 · 회계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제한적 처분 허용 –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정 (2023.9.1.)
98	학사 · 정원	박사학위 과정 신설관련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 –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1/2 비율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인원으로 제도를 개선함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2024.4.29.)
99	설립 · 운영	대학의 통 · 폐합 요건 중 교지요건 폐지 – 대학 위치 변경을 위해 교사요건만 충족할 것을 요구 (개선 전: 교지 · 교사요건 모두 충족)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3조 (2023.12.19.)
100	산학협력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는 지역(수도권 제외) 제한 폐지 –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일 경우, 주된 캠퍼스의 권역에 구애받지 않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 · 운영 가능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023.11.29.)
101	학사 · 정원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제 시행근거 마련 –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의 절차 · 유보범위 규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정 (2022.5.16.)
102	학사 · 정원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을 폐지하고, 모집을 유보하려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에 보고함으로써 입학정원 범위 등을 대학 자율로 결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2 및 제4조 삭제 (2023.2.3.)
103	학사 · 정원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허용 –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적용 근거를 마련함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1조, 제2조 (2024.4.22.)

분야		개선내용	비고
104	학사 · 정원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운영 중 입학정원대비 결손인원 부족시 대학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첨단학과 신입생 정원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하는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 (2022.10.27.)
105	학사 · 정원	(비수도권) 대학원에 결손인원 · 편입학여석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 허용 –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하게 결손인원을 활용하여 첨단산업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2 (2022.6.7.)
106	학사 · 정원	(비수도권) 비첨단산업분야의 결손인원 · 편입학여석 활용한 비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 허용 – 비수도권 대학(원)의 비첨단사업분야 학과 · 학부 증설 및 증원 시,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 활용 가능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3 (2023.2.3.)
107	학사 · 정원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학교 밖 수업 장소제한 완화 및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허용 –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공동융합학과의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한 장소를 종전 참여 대학이 위치한 시 · 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4, 제4조 (2023.2.3.)
108	재정 · 회계	둘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분리시 기본재산 분배 절차(원칙, 기준) 마련 –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에 우선 배분 절차 마련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정 제2조, 제3조 (2024.2.13.)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III.

대학 적용 현황

Ⅲ. 대학 적용 현황

1. 주요 규제개혁 과제

- 대학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성에 기반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조치들이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규제개선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사례를 공유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진, 교육부 관계자, 자문 위원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학 규제개선 108건의 항목 중 현장 활용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1건의 과제를 선별하여 8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51개의 주요 규제개선 항목을 중심으로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대학 규제개선 실태조사 항목(51개) 분야별 분류 |

연번	분야	개선 제목	2024년 성과자료집
1	교원	·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2–2], p.15
2	교원	·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1/5→1/3)	[4–30], p.72
3	교원	·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학칙 규율(자격 요건 대학 자율 운영)	[4–6], p.48
4	교원	· 박사학위 과정 신설관련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	[19–1], p.125
5	학사	· 대학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 향상(학교의 조직)	[2–3], p.16
6	학사	·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2–4], p.17
7	학사	· 산업체·연구기관 등 학교 밖 기관에서 협동수업 허용	[2–7], p.20
8	학사	· 교육과정 공동운영관련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의 대학 자율화	[2–8], p.21
9	학사	·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2–9], p.22
10	학사	·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2–10], p.22
11	학사	·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학년 전과 가능)	[2–13]. p.26
12	학사	·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사전승인·분야제한 폐지등)	[10–2], p.105
13	학사	·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2–5], p.18
14	학사	·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 운영	[2–12], p.25
15	학사	·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	[2–14], p.27

연번	분야	개선 제목	2024년 성과자료집
16	학사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학과등 자율성)	[3–1], p.39
17	정원	·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제 시행근거 마련	[22–1], p.131
18	정원	·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22–2], p.132
19	정원	·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허용	[22–3], p.133
20	정원	· 학생정원 조정 및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의 유연화	[4–3], p.45
21	정원	·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4–14], p.56
22	정원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4–15], p.57
23	정원	·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4–13], p.55
24	정원	· 학과(학부)의 신설·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4–11], p.53
25	설립·운영	· 여러 위치에 있는 교지를 하나의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	[4–4], p.46
26	설립·운영	· 국립대학에 소재지 외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허용	[3–2], p40
27	설립·운영	· 대학의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요건 폐지	[4–20], p.62
28	재정·회계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증여·교환등) 규제 완화	[5–1], p.76
29	재정·회계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무부담·권리포기) 규제 완화	[5–3], p.78
30	재정·회계	·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5–4], p.79
31	재정·회계	· 수익용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6–6], p.87
32	재정·회계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 방식 개선	[8–2], p.99
33	재정·회계	·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	[9–1], p.102
34	재정·회계	·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제한적 처분 허용	[18–1], p.123
35	재정·회계	·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4–26], p.68
36	산학·첨단	· (비수도권) 대학원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학과신설(정원 증원) 허용	[23–2], p.136
37	산학·첨단	· (비수도권) 비첨단산업분야의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한 비첨단 산업분야 학과신설 허용	[23–3], p.137
38	산학·첨단	·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학교 밖 수업 장소제한 완화 및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허용	[23–4], p.138
39	산학·첨단	·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과증설(정원 증원) 요건 완화	[4–9], p.51
40	산학·첨단	· 학과·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계약 정원 운영	[7–5], p.94
41	산학·첨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7–6], p.95
42	산학·첨단	·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7–7], p.96
43	산학·첨단	· 이동수업 운영관련 대학의 자율적 운영 허용(교육부 사전심의 폐지)	[14–2], p.114
44	산학·첨단	· 산업체 위탁교육의 범위를 석·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	[2–18], p.31

연번	분야	개선 제목	2024년 성과자료집
45	산학·첨단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등의 학생정원 제한 완화	[7–2], p.91
46	산학·첨단	· 첨단산업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 및 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 확보 기준 완화	[4–2], p.44
47	평생교육	·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확대(10%→30%)	[2–15], p.28
48	평생교육	·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매학기 12→24학점, 연간 24→42학점)	[2–17], p.30
49	평생교육	·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허용	[2–21], p.34
50	평생교육	· 사이버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6–3], p.84
51	글로벌교육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2–6], p.19

| 분야별 적용 사례 |

분류	사례
교원	(사례1) 부산외국어대학교(연간 강의책임시수 제도 도입 및 비정형시수 운영) (사례2) 차의과학대학교(박사과정 신설 관련 완화된 요건을 반영하여 대학원 학칙 신설)
학사	(사례1) 부산외국어대학교(소단위 전공 과정을 적극 활용한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사례2) 숭실대학교(예비군 훈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 (사례3) 삼육대학교(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혁신) (사례4) 인제대학교 등(3개 대학 공동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대학 연합체제 구축) (사례5) 인제대학교(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과제도 유연화) (사례6) 중원대학교(학위논문 심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연구 질 향상 기반 마련) (사례7) 경상국립대학교(소단위 전공과정의 제도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정원	(사례1) 울산대학교(학과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조정, 전공자율선택제 실시) (사례2) 원광대학교(적정규모화 TF 운영 및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사례3) 경북대학교(대학원 중심 체제 전환) (사례4) 계명문화대학교(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사례5) 국립부경대학교(모집정원유보제 및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통한 입시 경쟁력 강화)
설립·운영	(사례1) 충남대학교(대학 소재지 외에 첨단 융복합 캠퍼스 조성) (사례2) 울산대학교(도심형 열린 캠퍼스(UbiCam) 조성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사례3) 경북대학교(첨단 산학협력 Micro 캠퍼스 조성·운영)
재정·회계	(사례1) 대전보건대학교(초과 유휴시설 임대 및 교육적 활용) (사례2) 울산과학대학교(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사례3) 건국대학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향)
산학·첨단	(사례1) 국립부경대학교(교육요건을 완화하여 신산업·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사례2) 조선대학교(계약학과 정원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부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
평생교육	(사례1) 부산디지털대학교(일반대학원 설치·운영 및 시간제등록생 이수 학점 범위 확대) (사례2) 영진사이버대학교(사이버대학 최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글로벌교육	(사례1)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 보장) (사례2)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고려대 세종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대입 규제 완화)

2. 분야별 주요 내용 및 현황

- 2022년부터 추진된 대학 규제개혁은, 모든 대학에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고유한 여건과 운영 전략, 제도적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임

가. 교원

| 교원 분야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원칙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일부개정 (2024.2.20.)	[2–2], p.15
2	•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1/5 → 1/3)** –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우수 전문인력 활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5항 신설 (2023.9.19.)	[4–30], p.72
3	•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학칙 규율(자격 요건 대학 자율 운영)** – 종전 인문사회계열 최근 5년간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4편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4항 일부개정 (2024.3.1.)	[4–6], p.48
4	• **박사학위 과정 신설관련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 –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1/2 비율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인원으로 제도를 개선함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일부개정 (2024.4.29.)	[19–1], p.125

- 교원 분야 규제개선은 교육과 연구의 중심에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대학의 조직 운영, 인사관리, 평가체계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대학이 인력 운영 체계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음
- 주요 개선 내용은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확대,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자격요건 완화 등이며,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대학의 적용 사례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수를 유연하게 운영함. 비정형 시수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수업과 연구 간의 균형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차의과학대학교는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해 대학원 학칙을 신설하여 교원 자격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들은 교원 규제개선이 대학의 고유한 판단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선택적 활용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교원 분야 사례①

<table>
<tr><td>사례명</td><td>연간 강의책임시수 제도 도입 및 비정형시수 운영</td></tr>
<tr><td>학교명</td><td>부산외국어대학교</td></tr>
<tr><td>개선규제</td><td>■ [2-2] 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자율 운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1항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함</td></tr>
<tr><td>주요내용</td><td>
• 부산외대는 2024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학칙에 반영하여 '강의료 지급 규정'과 '책임수업시간 규정' 등을 개정함(2024.12.26.)
• '연간 강의책임시수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형시수'를 운영함. 또한 전임교원이 여러 사유로 인해 연간 1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연간 강의책임시간을 1개 학기 기준으로 적용하고, 일정 시수에 한하여서는 정규교과 이외에 '비정형시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시행으로 학기 내 책임시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년도에 보충하거나 일정 시수에 한해 정규 수업 이외의 비정형시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책임시수에 유연성이 확보되었음
<table>
<tr><th>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th></tr>
<tr><td>1. [강의료 지급 규정]
제3조(강의 책임시간) ① ~ ② (생략)
③ 전임교원의 담당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충 시수부분에 대하여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미달하고 2개 학기 이내 보충하지 않거나, 책임시수를 미달한 학기가 재직 마지막 학기인 경우 등 이후 보충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급여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당해학기 바로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2. [책임수업시간 규정]
제3조 1항 전임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td><td>1. [강의료 지급 규정]
제3조(강의 책임시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학기 내 충족해야 하며, 해당 학년도의 2개 정규학기의 강의시간을 합산한 연간강의시간(이하 "연간강의시간"이라고 한다)이 2개 정규학기의 책임시간을 합산한 연간강의책임시간(이하 "연간강의책임시간"이라고 한다)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단, 휴직, 파견, 연구년, 신규임용 등을 이유로 연간 1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의 연간강의책임시간은 1개 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강의책임시간 미달에 대한 보충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간강의책임시간 미달 이후 2개 학기 이내 보충하지 않거나, 연간강의책임시간을 미달한 학기가 재직 마지막 학기인 경우 등 이후 보충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급여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당해학기 바로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시수에 한하여 정규교과 이외에 비정형시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책임수업시간 규정]
제3조 1항 책임수업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td></tr>
</table>
</td></tr>
</table>

교원 분야 사례②

<table>
<tr><td>사례명</td><td>박사과정 신설 관련 완화된 요건을 반영하여 대학원 학칙 신설</td></tr>
<tr><td>학교명</td><td>차의과학대학교</td></tr>
<tr><td>개선규제</td><td>■ [4-6] 박사과정 설치 시 확보 교원의 자격 요건 학칙 규율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9조 제5항 신설
–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이 갖추어야 할 연구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19-1] 박사학위과정 신설관련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일부 개정
–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할 교원의 인원을 1/2 비율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인원으로 제도를 개선함</td></tr>
<tr><td>주요내용</td><td>• 차의과학대는 박사학위과정 설치 관련 완화된 요건을 반영한 대학원 학칙을 신설하여,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자격요건과 연구실적 충족 교원 비율을 세칙으로 명시함
<table>
<tr><th>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th></tr>
<tr><td rowspan="2">(신설)</td><td>[신설][제 대학원 학칙]
제2조 (학과와 과정)
⑤ 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교원 연구 실적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제 대학원 세칙] 제14조 2항
제14조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③ 자연과학 · 공학 · 의학 계열: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 6편 이상(교원당)</td></tr>
<tr><td>[신설][제 대학원 학칙]
제2조 (학과와 과정)
⑤ 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교원 연구 실적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제 대학원 세칙 제14조 2항]
제14조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②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td></tr>
</table></td></tr>
</table>

나. 학사

| 학사 분야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대학의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 향상** –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 · 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24.2.20.)	[2–3], p.16
2	•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과정 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신설 (2023.4.18.)	[2–4], p.17
3	• **교육과정 공동운영관련 학점인정의 범위 · 기준의 대학 자율화** –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종전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 범위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2024.2.20.)	[2–8], p.21
4	•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 예비군 훈련 동안 결석 처리하지 않고, 수업 보충 실시, 그 외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신설 (2024.2.20.)	[2–9], p.22
5	•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 종전에는 학생이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학칙에 따라 전공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024.2.20.)	[2–10],p.23
6	•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학년 전과 가능)** – 종전 2학년 이상의 학생만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하던 것을 학생의 학년 제한을 삭제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2024.2.20.)	[2–13], p.26
7	•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자율화(사전승인 · 분야제한 폐지등)** – 대학이 학위과정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사전승인, 분야제한, 강의평가 공개 관련 규제 폐지)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및제6조삭제 (2023.12.5.)	[10–2], p.105
8	•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 종전 두 대학간 공동 운영에서 둘 이상의 대학간 공동으로 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024.2.20.)	[2–5], p.18
9	• **의대 등 수업연한 자율 운영** – 의학계열(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학사학위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예과 2년과 본과 4년 구분 운영을 6년의 수업연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2024.2.20.)	[2–12], p.25
10	•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 – 심사위원 수(종전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 이상)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2024.2.20.)	[2–14], p.27
11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학과등 자율성)** – 국립대학에 학과 · 학부 외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학과등)을 둘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제2항 (2024.3.12.)	[3–1], p.39

- 학사 분야의 규제개선은 대학이 교육과정 설계, 전공 운영, 학사관리 등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용의 폭을 확대한 조치로, 이를 통해 각 대학이 고유한 여건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사제도를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 것임
-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전공 선택권 확대, 전학년 전과 허용 등을 통해 조직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되었음. 공동교육과정 학점 인정 기준,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방식, 학위논문 심사위원 구성 등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의학계열의 수업연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국립대학 또한 다양한 조직 형태를 둘 수 있게 되어 행정 및 교육체계 운영의 폭이 넓어졌음
- 대학의 적용 사례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소단위 전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전공 간·학년 간 경계를 넘어 자율적으로 융합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숭실대학교는 예비군 훈련 학생의 학습권 보호 조치를 학사제도에 반영하였고, 삼육대학교와 인제대학교는 전과 제도를 유연화하여 학사운영 전반의 탄력성을 높임. 또한 인제대학교는 공동 교양교육과정을 3개 대학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중원대학교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수를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논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원 구성으로 심사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음. 경상국립대학교는 소단위 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의 융합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간제등록생 등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함
- 학사분야 규제개선이 학생 개인의 학습권과 전공 선택권 보장뿐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사제도의 구조적 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

학사 분야 사례①

사례명	소단위 전공 과정을 적극 활용한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학교명	부산외국어대학교
개선규제	■ **[2-4]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의 2 신설 –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대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10]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개정 – 기존에는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부산외대는 전체 51개 학과의 교육과정을 수요자 기반 전공역량과 연계하여 296개의 모듈(9~12학점)로 편성하였으며, 또 다른 소단위 전공과정인 신산업 분야 '마이크로 전공'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음. 또한 전체 모듈형 교육과정을 5개 대분류 체계 및 72개 중분류로 나누어 모듈 학습 로드맵에 적용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모듈을 조합하여 학생 설계 융합전공을 학생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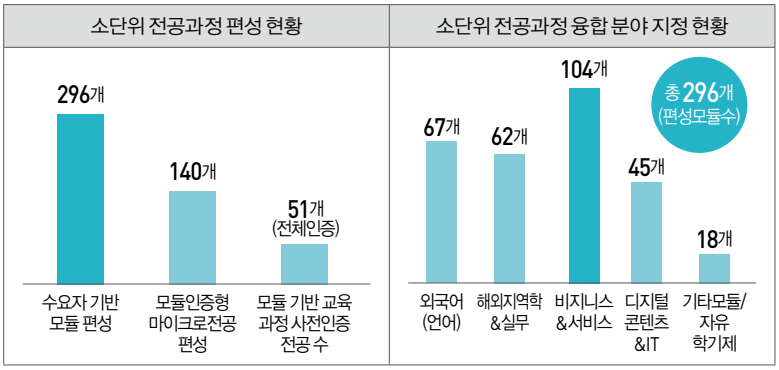 • 2024년에는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여 학생들이 어느 전공이든 2개 이상의 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전공 간 공통모듈 및 융합모듈을 적극 편성하여 학생들이 전공 간 경계가 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공자율선택제 대상 전공 수는 2020년도 14개, 2023년에는 49개이며 대상 학생 수는 2020년 518명, 2023년에는 1,425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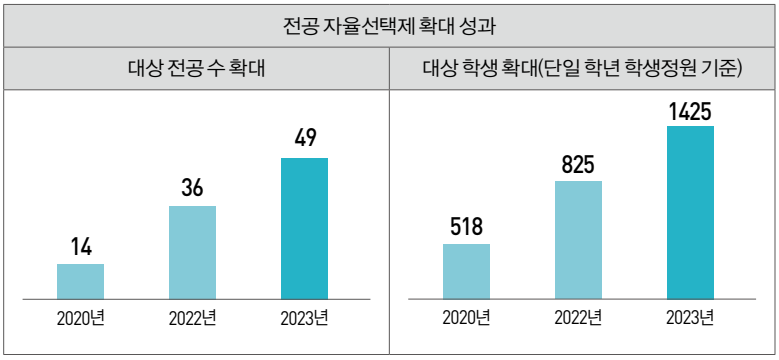

학사 분야 사례②

사례명	예비군 훈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명	숭실대학교
개선규제	■ **[2-9] 예비군 훈련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명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 신설 – 예비군 훈련 동안 결석 처리하지 않고 수업 보충 실시, 그 외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 숭실대는 2023년 12월 학생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예비군 학습권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음.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 3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였고, 유고결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개정 전	개정 후
없음	학칙시행세칙 제23조의3(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소속 학과(부)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학사 분야 사례③

사례명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혁신
학교명	삼육대학교
개선규제	■ **[2-10]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 종전에는 학생이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학칙에 따라 전공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삼육대학교는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 주도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전면 도입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전공 이수 방식을 자율 설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교는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를 신설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약 30.6 %를 무전공 통합정원제로 선발하기 시작하였음 • 신입생들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1학년 동안 SU-PREME(Pre-Major Exploration) 교육과정에서 FYE(First Year Experience), 전공선택교과, 전공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하며, 2학년 진학 시 계열 제한 없이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자기주도설계전공, 전과 시기·자격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 AI 기반 전공설계 시스템 'SUHO'를 활용한 전공 설계 지원, 전담교수(Academic Assistant)·전공지도교수(Joint Appointment) 제도 등을 병행하여 운영 중임

학사 분야 사례④

사례명	**3개 대학 공동 교양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대학 연합체제 구축**
학교명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개선규제	■ **[2-5]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항 – 종전 두 대학 간 공동 운영에서 둘 이상의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 가능
주요내용	• 김해시에 소재한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는 서로 다른 학제와 설립 유형(4년제, 전문대)을 가진 지역 대학들로, 교양과목 운영 시 자원 중복, 개설 편차, 콘텐츠 불균형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기존에는 두 대학 간에만 공동 교육과정이 허용되어 연합 교육 운영에 제약이 있었음 • 제도 개선으로 셋 이상의 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세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정식으로 공동 교양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됨. 김해 All-City 허브 캠퍼스를 거점으로 대면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학사관리시스템(LMS) 연동, 임시 학번 발급, 시험 관리 절차 통합 등 행정적 연계도 완비하였음 • 2024학년도에는 공동 교양 8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대학 간 교차수강생이 163명에 달함. '청년이 만드는 동네BOOK'은 3개 대학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탐방, 공동 집필, 도서 출간까지 이끈 대표적 프로젝트형 교양 대면수업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공동교육과정 확대로 각 대학이 가진 인프라와 전문성을 통합하여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는 선택권과 학습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학사 분야 사례⑤

사례명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과제도 유연화**
학교명	**인제대학교**
개선규제	■ **[2-13]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전학년 전과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 편입학 등) 제3항 – 종전 2학년 이상의 학생만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하던 것을 학생의 학년 제한을 삭제함
주요내용	• 인제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전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음. 2024년 7월,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입학정원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과 시기와 횟수 제한도 폐지함. 또한,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발맞추어 1학년 학생의 계열 간 이동을 연 2회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함 •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교무처는 '전공자율선택제 TF'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제도 시행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전공을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진로학습코디네이터를 두어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밀착지원하고 있음

학사 분야 사례⑥

사례명	학위논문 심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의 적합성 제고
학교명	중원대학교
개선규제	■ [2-14] 대학의 학위논문 심사에 대한 자율성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심사위원 수(종전 석사 3인 이상, 박사 5인 이상)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 중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2024년 4월 자체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대학원 논문 심사 제도를 개선함 • 종전에는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교외에서 위촉하고,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은 교외에서 위촉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박사학위의 경우 외부 위원 최소 1인(최대 3인), 석사학위의 경우 최대 1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이러한 자율권 확보를 바탕으로 대학은 각 논문의 성격과 연구 주제에 따라 유연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학위논문 심사의 실질적 전문성과 적합성이 제고되었으며, 지도교수와 유관 전공 교원 중심의 심층적 평가가 가능해짐

학사 분야 사례⑦

사례명	첨단분야 소단위 전공과정의 제도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학교명	경상국립대학교
개선규제	■ [2-4]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등 –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과정 운영 가능
주요내용	• 경상국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소단위 전공과정 도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마이크로디그리교육과정', 2024년 전국최초 '마이크로디그리 융합학사' 제도를 도입함 ※ 마이크로디그리 융합학사: 마이크로디그리 3개 교육과정 이수 시 학위수여(복수전공) • 대학은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도입을 위해 학칙 제71조의2를 신설하고, 전공·교양 혼합형 집중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정규 학기 내 소수 학점 이수만으로 특정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하였으며, 시간제 등록생과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음 • 3년간 총 12개 분야 64개의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항공드론, 반도체, 빅데이터 등 국가 전략산업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함

다. 정원

| 정원 분야 주요 규제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제 시행근거 마련** –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 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유보 범위 규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정 (2022.5.16.)	[22–1], p.131
2	•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을 폐지하고, 모집을 유보하려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에 보고함으로써 입학정원 범위 등을 대학 자율로 결정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2조 및 제4조 삭제 (2023.2.3.)	[22–2], p.132
3	• **교육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허용** – 교육대학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적용 근거를 마련함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1조, 제2조 (2024.4.22.)	[22–3], p.133
4	• **학생정원 조정 및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의 유연화** – 종전 학사 입학정원 1.5명 감축하여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1명 증원에서 1:1 비율로 개선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 감축에서 1명 감축으로 동일하게 조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4항 및 【별표1의6】제1호,제3호 (2022.8.9.)	[4–3], p.45
5	•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 종전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6항후단삭제 (2024.4.30.)	[4–14], p.56
6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 종전 석사:박사 2:1 감축(증원) 비율을 1:1로 개선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6】제3호및제4호 (2024.4.30.)	[4–15], p.57
7	•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학과 증설, 학생 정원증원하는 경우 4대 요건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3제4항신설 (2024.4.30.)	[4–13], p.55
8	•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3제4항삭제 (2023.1.10.)	[4–11], p.53

- 정원 분야의 규제개선은 입학정원 조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조 개편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조치임. 학령인구 감소, 지역 수요 변화, 학과 구조 개편 등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입학정원 모집유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은 교육부 보고만으로 유보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학사와 대학원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은 1:1로 개선되고,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율 유지 기준이 폐지됨
- 전년도 총 입학정 원 범위내에서 학과 신설·통합 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 기준이 폐지되어 정원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됨. 또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1:1 비율로 조정되었음
- 대학 적용 사례로, 울산대학교는 학과 구조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조치를 활용하여 모집정원 재배분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였음. 원광대학교는 적정규모화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의 부담 없이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실현함
- 경북대학교는 대학원 중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교육·연구 기능을 보다 원활히 재구성하였고, 계명문화대학교는 대학–지자체 연계 지역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실행함. 국립부경대학교는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하여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 운영 전략을 추진함
-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정원 규제개선이 정원 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 조직 재정비, 입시 전략 조정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정원 분야 사례①

사례명	학과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조정, 전공자율선택제 실시
학교명	울산대학교
개선규제	■ **[4-11]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대학설립 · 운영규정」제2조의3 :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 **[2-10] 전공자율선택제의 시행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 종전에는 학생이 학과가 제공하는 전공 등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학칙에 따라 전공을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울산대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기존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과)를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로 학사조직을 개편함 • 이와 함께 신설된 '아산아너스칼리지 자율전공학부'는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한 후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고 본인의 진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아산아너스칼리지는 무(無)전공 입학, RC(Residential College) 기반 학습, 마이크로모듈형 트랙 운영, 2회 해외 리더십 연수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에게도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시하고자 함

정원 분야 사례②

사례명	적정규모화 TF 운영 및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학교명	원광대학교
개선규제	■ **[4-11]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대학설립 · 운영규정」제2조의3 :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주요내용	• 원광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내부에 '적정규모화 TF'를 구성하고, 중장기 학사조직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함 • TF에서는 학과 운영 실적,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수, 중복 전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학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으며, 학과 설립 · 폐지 등 정원 조정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총 6개 학과(부)에 대해 신입생 모집 중단 및 학과 폐지를 결정함 • 원광대는 학과개편 과정에서 교원 충원 요건의 부담 없이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설계 · 시행할 수 있었음 • 기존에는 교원 확보율 충족 여부가 개편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개선된 제도 환경하에서는 실질적 운영 성과와 학사 수요에 기반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과 간 기능 중복 해소 및 자원 재배치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

정원 분야 사례③

사례명	대학원 중심 체제 전환
학교명	경북대학교
개선규제	■ **[4-13]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학과 개편 및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제4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학과 증설, 학생 정원증원하는 경우 4대 요건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4-14]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입학정원 상호조정 허용**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및 자체조정·상호조정의 기준) 제6항 – 종전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폐지 ■ **[4-1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조정 비율 1:1 적용**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6] 상호조정의 기준(제2조3제6항 관련) – 종전 학사 입학정원 1.5명 감축해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1명 증원에서 1:1 비율로 개선
주요내용	• 2025학년도부터 대학원 중심 체제 전환을 목표로, 대학원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학과를 신설함. 이를 위해 학내 수요 기반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을 198명(전년 대비 +15.9%), 박사과정 정원을 91명(전년 대비 +17.6%) 증원함 • 세부적으로는 우주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박사), 첨단바이오융합학과 등 4개 신규 모집단위를 신설하고, 스마트농생명식품융합대학원과 과학기술대학원의 일부 정원을 일반대학원으로 이관·재배치함. 또한, 석사와 박사 정원 간 상호 조정 및 일부 학과의 명칭 변경 등도 함께 추진함 • 이를 통해 경북대는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정원을 집중 배치하고,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 정부의 대학원 정보공시 신규지표 도입 추진에 대응해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병행한 정원관리 체계도 병행하여 운영 중임

정원 분야 사례④

사례명	지역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
학교명	계명문화대학교
개선규제	■ **[4-11]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3 :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 **[4-30] 겸임 · 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1/5 → 1/3)**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5항 – 일반대학의 겸임 → 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우수 전문인력 활용
주요내용	• 계명문화대학은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이 특화된 대학이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구시의 보건 · 사회복지업 증가 추세 및 헬스케어 분야 혁신전략을 반영한 지자체-대학 연계 인재양성을 위하여 유연한 학과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대학은 학과 설립 · 폐지 등 정원 조정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학과구조개편을 유연하게 실시함. 그 결과, 대학의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편제정원 비중이 점차 감소(2022년 대비 2024년 편제 정원의 3.7%(209명))한 반면, 지자체-대학 연계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연계열 학과 신설 및 증원을 통하여 편제정원 비중을 확대함(2022년 대비 2024년 편제 정원의 5.8%(262명)) • 이를 통하여 대학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지자체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 정주인재 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 •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열별 전임교원의 유연한 확보와 더불어 산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겸 · 초빙교원을 확대하여 교원 확보율 100%를 충족함. 전임교원 인건비 고정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정원 분야 사례⑤

사례명	모집정원유보제 및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통한 입시 경쟁력 강화
학교명	국립부경대학교
개선규제	■ **[2-22] 모집유보제 참여대학의 기준 완화 및 모집유보 입학정원의 범위 완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1항 –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의 절차 · 유보범위 규정 ■ **[4-11]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학과등 입학정원 조정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3 : 학과(학부)의 신설 · 통합 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원 확보요건 폐지 – 종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등의 기준을 폐지
주요내용	• 국립부경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과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통해 모집정원 유보제를 도입하였음 • 제도 도입 이후, 국립부경대는 AI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학과 신설 등 고등교육 현장 수요를 반영한 모집단위의 신입생 선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고, • 이러한 정원 운영의 유연성 확보는 대학 차원에서 학과 구조개편과 정원 통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요 맞춤형 학과 중심으로 정원을 재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라. 설립·운영

| 대학설립·운영 분야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여러 위치에 있는 교지를 하나의 단일교지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 – 단일 교지 인정 범위 확대(2km→20km) 및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교지로 보도록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제4항 (2022.8.9.)	[4–4], p.46
2	• **국립대학에 소재지 외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허용** –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대학 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지 외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제2항 (2023.11.16.)	[3–2], p.40
3	• **대학의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의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요건 폐지** – 대학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사 요건 폐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6항삭제 및 제9조제3항신설 (2023.9.19)	[4–20], p.62
4	•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교지 임차 허용** – 교사 확보율이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를 허용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1항 (2023.9.19)	[4–25], p.67

- 설립·운영 분야의 규제개선은 대학이 물리적 공간 구성, 조직 형태, 교육시설 설치 등에 있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한 조치임
-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단일 교지 인정 범위가 2km에서 20km로 확대되었고, 동일 시군구 내 복수 교지를 단일 교지로 간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국립대학은 교육·연구 목적에 한해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교 소재지 외 지역에도 교육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졌음
- 아울러, 대학 일부를 소재지 외 국내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 교사 확보 요건이 면제되고, 교사 확보율이 100%를 초과한 대학은 교사·교지의 임차가 허용되어 물리적 인프라 확보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음
- 적용 사례로 충남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국립대학이 본교 소재지 외 지역에도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내포신도시에 첨단 융복합 거점을 목표로 한 '내포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임
- 울산대학교는 교사 요건 완화 등 설립·운영 규정의 개선을 활용하여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오픈캠퍼스(UbiCam)를 조성하고,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복합형 교육공간을 마련함

- 경북대학교는 첨단산업 분야 학과의 산학협력 연계운영을 위해 대구시 내 5개소에 첨단 산학협력 Micro캠퍼스를 조성하여 지역기반 교육·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설립·운영 요건 완화가 지역적 특성과 학습자 다양성을 반영한 공간 전략과 조직 설계로 연결되며, 대학의 기능 확장과 교육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설립·운영 분야 사례①

사례명	**대학 소재지 외에 첨단 융복합캠퍼스 조성**
학교명	**충남대학교**
개선규제	■ **[3-2] 국립대학이 소재지 외에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허용**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시설 등) 제2항 – 국립대학이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대학 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지 외에 교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충남대학교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내포신도시에 '내포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음. 본교 소재지가 아닌 충남 홍성의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이 캠퍼스는, 반려동물 산업을 비롯한 디지털농업모빌리티, 동물바이오헬스, 동물방역 등 첨단 융복합 분야의 실증·연구·산학협력 중심지로 운영될 계획임 • 국립대학이 소재지 외에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 제2항)가 마련되면서 충남대의 내포캠퍼스 설립계획은 2024. 11월에 대학 설립·개편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음 • 이에, 충남대는 부지 매입비,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충남도청, 정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임

설립 · 운영 분야 사례②

사례명	도심형 열린 캠퍼스(UbiCam) 조성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
학교명	울산대학교
개선규제	■ **[4-25] 교사 확보율 100% 초과시, 교사 · 교지 임차 허용**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 – 교사 확보율이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 추가로 교지 · 교사를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를 허용
주요내용	• 울산대학교는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교사 요건과 관련한 개선 과제를 적극 활용하여 도심 곳곳에 분산캠퍼스(UbiCam)를 조성하였음. 교회,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유휴 공간을 교육장소로 전환하고, 산업체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학습 거점을 마련함 • 이 분산캠퍼스는 본교까지 가는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야간 · 주말 수업, 직무재교육, 융합전공 프로그램 등의 평생학습형 교육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 •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된 열린 캠퍼스 운영은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울산대가 지역 평생학습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함. 이러한 노력은 실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와 학습자의 만족도로 이어졌고, 국내대학 최초의 '도심형 오픈캠퍼스' 사례로 주목받으며 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음

설립 · 운영 분야 사례③

사례명	첨단산학협력 Micro 캠퍼스 조성 · 운영
학교명	경북대학교
개선규제	■ **[4-25] 교사 확보율 100% 초과 시, 교사 · 교지 임차 사용 가능**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9조(운영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 – 교지 · 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이나, 추가로 교지 · 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임차 활용 가능
주요내용	• (주요내용) 경북대학교는 대학 소재 외 대표적 기업집적지인 신서혁신도시, 수성알파시티, 성서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5개소에 대구시 및 산학협력단 소유 공간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연구 및 기업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Micro 캠퍼스를 조성 · 운영하고 있음 • (운영현황) Micro 캠퍼스에 약 40여 명의 대학 소속 연구원 등이 상주하면서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기업 애로 해결 지원, 대학 장비 활용 개발지원, 기업 재직자 교육, 창업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경북대는 Micro 캠퍼스별로 대학 전문인력(교수, 연구원, 포스트닥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재학생 현장실습 연계, 대학원생 기업 공동 프로젝트랩 운영 등을 추진하며, 지역 대학들도 Micro 캠퍼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Micro 캠퍼스가 명실상부 산업단지 등의 혁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임

마. 재정·회계

| 재정·회계 분야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매도·증여·교환등) 규제 완화** – 전문대학 학교법인도 기본재산 매도 등의 경우 신고 가능 대상에 포함(개선 전: 대학·산업대학, 사이버대학만 가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3호 (2023.6.13.)	[5–1], p.76
2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무부담·권리포기) 규제 완화** – 사이버대학·전문대학 학교법인도 의무부담·권리포기 시 신고 가능 대상에 포함(개선 전: 대학·산업대학만 가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7호 (2023.6.13.)	[5–3], p.78
3	•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이전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확대(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포함)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도 처분 가능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2023.6.13.)	[5–4], p.79
4	• **수익용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 –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제7항신설 (2023.9.19.)	[6–6], p.87
5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방식 개선**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할 때,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 (2024.3.21.)	[8–2], p.99
6	•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 –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며, 실무적 회계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제42조 (2023.6.1.)	[9–1], p.102
7	•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제한적 처분 허용** –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제정 (2023.9.1.)	[18–1], p.123
8	•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 가능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신설 (2023.9.19.)	[4–26], p.68

- 재정·회계 분야의 규제개선은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교사·교지, 유휴시설 등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완화한 조치임. 이를 통해 재정여건 변화나 학생 수 감소, 공간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자산의 활용 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음
-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기존 대학·산업대학과 동일하게 신고를 통해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사이버대학과 전문대학도 의무부담·권리포기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 대상이 됨. 학교 이전 등의 경우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위도 교지·교사·실습시설 등으로 확대되었음
-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등록금·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완화되고,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산정 방식도 직전 학년도 기준으로 명시되었으며 회계처리 기준과 용어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정비되었음
- 또한,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도 및 담보 제공이 허용되었으며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한 유휴교사는 편익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전보건대학교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질병대응센터에 임대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한편 센터와의 산학협약을 통해 기자재 공동 활용, 교육·실습 협력을 추진 중이며, 울산과학대학교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특정목적기금에 적립할 계획임. 건국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완화로 확보율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자산 운용의 안전성이 제고됨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3년 2024년 사이 일반대학은 14.1% p 상승하고,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22.1% p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산정 기준의 완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러한 대학의 적용 사례들은 각 대학이 제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간 자원을 효율화하고 외부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재정회계 분야 사례①

사례명	초과 유휴시설 임대 및 교육적 활용
학교명	대전보건대학교
개선규제	■ **[4-26] 초과 유휴교사에 대한 임대 허용**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2항 –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 가능
주요내용	• 대전보건대학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683.229㎡)를 2024년 8월부터 2030년 7월 말까지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임대를 제공하고 그 임대 수익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등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대전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와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와의 산학 협약이 진행 중이며, 협약이 체결되면 상호 기자재 공동 사용, 전문교육훈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학생들에게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재정회계 분야 사례②

사례명	교육 · 연구에 지장이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학교명	울산과학대학교
개선규제	■ **[5-4]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의 확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이전 등의 경우, 학교법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확대(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 연구시설 포함)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도 처분 가능
주요내용	•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총 8개 필지(4,283㎡)를 감정평가액으로 처분 〈 활용계획 〉 · 처분대금은 학교 결정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정목적기금 적립 · 2026년 이후 특정목적기금 규모에 따른 사유지 일부 매입 예정

재정회계 분야 사례③

사례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향
학교명	건국대학교
개선규제	■ **[4-24] 수익용 기본재산 충족 기준 완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7항 – 수익용 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 수익 총액에서 연간 등록금 · 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 –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 법인인 연간 등록금 · 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주요내용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연간 등록금, 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023학년도 398.1%에서 기준 변경 이후 2024학년도 443.1%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2024년 건국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단위:천원)

법인명	등록금+수강료 수입*	부설학교 운영수익 총계**	부설학교 전입 · 기부 · 원조 보조수입***	기준액**** (a)	보유액 (b)	확보율 (c)=(b/a)*100
건국대학교	244,362,696	19,471,518	1,921,594	253,137,658	1,121,643,163	443.1%

* (등록금+수강료 수입) 2024학년도 대학교 등록금+수강료 수입
** (운영수익 총계) 2024학년도 건국대 부설학교 학교회계 세입 합계액
*** (전입 · 기부 · 원조보조 수입) 2024학년도 건국대 부설학교 학교회계 세입 합계액 內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 (기준액) [(등록금+수강료 수입) + (운영수익 총계–전입 · 기부 · 원조보조 수입)/2]

• 확보율 기준액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기준액이 전년(277,004,177천 원) 대비 8.6% 감소하였으며, 이는 38.2%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상승효과를 만들어 냄 (2023년 기준액 적용 시 확보율 404.9%)

• 이를 통해 건국대는 재정 건전성 평가항목 중 하나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서 상향된 지표를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 경쟁력 및 학교법인의 자산 안전성을 확보함.

바. 산학 · 첨단

| 산학 · 첨단 관련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비수도권) 대학원에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학과 · 학부의 신설(정원증원) 허용** –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하게 결손 인원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2 (2022.6.7.)	[23–2], p.136
2	• **(비수도권) 비첨단산업분야의 결손인원 · 편입학여석 활용한 비첨단산업분야 학과 신설 허용** – 비수도권 대학(원)의 비첨단사업분야 학과 · 학부 증설 및 증원 시,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 활용 가능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3 (2023.2.3.)	[23–3], p.137
3	•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학교 밖 수업 장소 제한 완화 및 (공동융합학과) 학교 밖 수업 허용** –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 공동융합학과의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한 장소를 종전 참여 대학이 위치한 시 · 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의4,제4조 (2023.2.3.)	[23–4], p.138
4	• **산업체 · 연구기관 등 학교 밖 기관에서 협동수업 허용** –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동수업 가능케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신설 (2023.2.20.)	[2–7], p.20
5	•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과 증설(정원증원) 요건 완화** – 대학이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대학원에서 대학까지 확대)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학과증설(학생 정원증원) 하는 경우, 교원 확보 요건 완화(겸 · 초빙 비율 1/5 → 1/3 적용, 국립대는 교원 수의 70% 확보)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2조의3 제2항 (2023.9.19.)	[4–9], p.51
6	• **학과 · 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계약정원 운영** – 국가 · 지자체가 첨단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산업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이미 설치된 학과 · 학부 생의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 계약한 학생 정원으로 운영 가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2신설 (2023.3.28.)	[7–5], p.94
7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확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 기업도 추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2023.3.28.)	[7–6], p.95
8	•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범위 확대** –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한 사용범위를 종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대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2023.3.28.)	[7–7], p.96
9	• **이동수업 운영 관련 대학의 자율적 운영 허용(교육부 사전 심의 폐지)** – 이동수업을 자율 운영(학칙 운영)으로 허용하고, 졸업 학점 50%까지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규정 제19조,제20조 (2023.5.22.)	[14–2], p.114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0	• **산업체 위탁교육의 범위를 석·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 – 종전 학사학위과정에서 석사·박사학위과정까지 확대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2024.2.20.)	[2–18], p.31
11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 제한 완화** – 첨단산업분야의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50/100으로 허용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2023.3.28.)	[7–2], p.91

- 산학·첨단 분야의 규제개선은 대학이 산업 변화와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정원, 수업 방식 등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임
-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하게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산업분야 학과 신설과 및 증원이 가능해짐. 첨단산업분야 공동학과와 공동융합학과는 학교 밖 수업 장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도 허용되었음
- 또한,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또는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목적으로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설치된 학과·학부의 학생 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계약 정원 운영이 가능해졌음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가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 범위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됨 또한, 이동수업은 대학 자율로 운영이 가능하며, 산업체 위탁교육은 석·박사과정까지 확대되고 계약학과 설치 시 정원 기준도 완화됨
- 대학 적용 사례로, 부경대학교는 신산업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해 자체 정원을 조정하고, 공동학과 형태를 포함한 3개 첨단학과를 신설함. 조선대학교 등 4개 대학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특화형 석·박사 인재양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계약학과 운영과 기업연계 교육을 위한 연합 운영체계를 추진 중임.
- 이처럼 산학·첨단 분야에서의 규제개선 제도는 정원 정책, 학과 편제, 수업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대학 현장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운영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산학 · 첨단 분야 사례①

사례명	다양한 교육요건을 완화하여 신산업 · 첨단분야 학과 신설
학교명	국립부경대학교
개선규제	■ **[4-9] 첨단산업 인력 양성 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과증설(정원증원) 요건 완화**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 · 정원 등의 증설 · 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 · 상호조정의 기준) ② –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학과 · 정원 등을 증설 · 증원하는 경우 대학이 갖춰야 하는 교원 확보 기준을 완화 ■ **[23-1]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운영 중 입학정원대비 결손인원 부족시 대학 자체적 보완 기회 부여** *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고시 제3조(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기준) – 첨단학과 신입생 정원을 결손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하는데,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편제 완성연도까지 다른 모집단위 정원에서 감축
주요내용	• 국립부경대학교는 반도체 · 인공지능 · 첨단바이오산업 등 신산업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①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나노융합전공, 차세대반도체공학전공), ②스마트 · 친환경선박 분야로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③핀테크 분야와 관련하여 타 대학(동서대학교)과 공동 학과로 디지털금융학과를 신설 추진하였음 • 첨단산업 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을 위해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6조(교원)에 따른 교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힘든 실정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증설(정원증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교원확보율이 완화(70%) 되어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추진할 수 있었음 • 또한, 첨단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정원 확보를 위해 편입학여석(30명)을 활용하고, 학내 타 학과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 자체 정원 감축 및 순증을 통해 입학정원증원(68명)을 하였는데, 당시 부산 · 경남권에서 최대 증원이었음 • 국립부경대학교는 첨단학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첨단학과 신설 준비위원회'와 '공동학과 디지털금융학과 신설 준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학과신설을 위한 교원 및 조교 채용, 교육과정 편성, 공동학과 입학생 모집전형, 등록금 책정 등을 논의 · 추진하였음 • 이런 규제혁신 조치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 및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산학 · 첨단 분야 사례②

사례명	계약학과 정원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부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
학교명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GIST, 인하대학교)
개선규제	■ **[7–5] 학과 · 학부의 학생정원을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계약정원 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 국가 · 지자체가 첨단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산업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이미 설치된 학과 · 학부 생의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 계약한 학생 정원으로 운영 가능 ■ **[14–2] 이동수업 운영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허용(교육부 사전심의를 폐지)** * 「계약학과 설치 · 운영 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제19조(원격수업), 제20조(이동수업) –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권역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동수업을 교육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학교 자율 운영으로 허용하며, 원격수업도 졸업학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
주요내용	• 조선대(주관), 전남대, GIST, 인하대 등 4개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형의 석 · 박사 인재양성센터를 구축 · 지원하고 있음. 이 사업에는 기존 학과 · 학부를 활용한 계약 정원 50명(매년 1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컨소시엄 4개 대학은 2030년까지 석 · 박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사업의 해당 컨소시엄형 인재양성센터는 2024년 7월 1개 센터를 과학기술부 등에서 첫 번째 지원한 이후 2025년 7월 개원 예정하는 신규 1개 센터 등 총 2개 센터를 지원할 예정임.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국비 전액 지원 방식으로 총 사업비 210억 원을 출자 지원할 예정임 • 이런 반도체 계약학과 연합운영사업은 석 · 박사생 인건비의 50%를 포함하여 센터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비, 외부강사 활용비, 실습 · 연구 기자재 구입비, 교류회 개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컨소시엄이 현재 국내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 약 20개 社와 참여 협의 중에 있음. 기업은 주로 계약정원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①기업장학금, ②산학 협력과제, ③인턴십, ④기업 현장방문 및 견학 기회 등을 제공하며, 이 학생들이 졸업 시에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반도체 컨소시엄 계약학과는 2024년 12월까지 2025년 1학기 과정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 · 협약하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또한 2025년 2월까지 '학생 선발 설명회'를 통해 참여 학생을 홍보 · 모집하여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학생 선발 및 기업 매칭을 완료하였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정원제를 적용하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특화형 석 · 박사 인재 양성 신규센터를 2025년 7월까지 1개 추가로 선정 · 개소하고자 추진하였음

사. 평생교육

| 평생교육 분야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시간제등록생의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 확대 (10% → 30%)** – 종전 10%에서 30% 범위에서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2024.2.20.)	[2–15], p.28
2	•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 – 종전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에서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2024.2.20.)	[2–17], p.30
3	•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운영계획서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62조의2 신설 (2023.4.19.)	[2–21], p.34
4	• **사이버대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 후속으로 사이버대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도 규정함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제3조 (2024.5.21.)	[6–3], p.84

- 평생교육 분야의 규제개선은 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원격 기반 교육 활성화 등 유연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함. 이는 성인학습자, 직장인,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비전형 학습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제등록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비율이 확대되고,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도 상향되었음. 또한, 사이버대학은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함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운영이 가능해졌음
- 부산디지털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시간제등록생의 이수학점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고,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위 간 연계를 강화하였음
- 이러한 사례들은 평생교육 규제개선이 대학의 교육 기능 확대와 다양한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전략에 반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이 제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성인 대상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줌

평생교육 분야 사례①

<table>
<tr><td>사례명</td><td>일반대학원 설치 · 운영 및 시간제등록생 이수 학점 범위 확대</td></tr>
<tr><td>학교명</td><td>부산디지털대학교</td></tr>
<tr><td>개선규제</td><td>■ [6–3] 사이버대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 확대
*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 제3조 일부개정
–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 외에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17]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수강학점 한도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일부개정
– 시간제등록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 범위를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의 범위로 확대함</td></tr>
<tr><td>주요내용</td><td>• 부산디지털대학교는 2024년 9월 20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특수대학원인 휴먼서비스대학원을 2025년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그동안 특수대학원 운영을 통해 누적된 최신 교육 콘텐츠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학습 운영 시스템과 첨단 화상 강의실,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며,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통해 전문적인 분야에서 실무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칙 개정을 통해 시간제등록생의 이수 학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성인학습자(재직자) 친화형 제도를 마련함
<table>
<tr><th>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th></tr>
<tr><td>〈학칙 제49조 2항〉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절학기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 중 F 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최대 9학점(타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학칙시행세칙 : 제55조 1항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학기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 중 F 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최대 9학점 (타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td><td>〈학칙 제49조 2항〉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절학기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 중 F 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최대 9학점(타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학칙시행세칙 : 제55조 1항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학기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 중 F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최대 9학점(타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td></tr>
</table></td></tr>
</table>

평생교육 분야 사례②

사례명	사이버대학 최초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학교명	영진사이버대학교
개선규제	■ [2-21]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신설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과 관련하여,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주요내용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2023년 9월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며, '제20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 관련 학칙을 신설(2023.11.1.)하여 2024년도부터 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함 •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반 전문대학과 2년제 사이버대학 간 법규적 차별 규제가 해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및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게 됨. 또한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교육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2년제 사이버대학 졸업생 및 관련 전공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교육 참여 기회와 보편적 교육의 접근성이 확대됨. 즉,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의 학습욕구를 학사학위 취득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자부심 고취와 대학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음 • 영진사이버대는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대상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 91.6%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특히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었음

아. 글로벌 교육

| 글로벌 교육 분야 제도 주요 개선 내용 |

	개선 제목	법령명(시행일)	2024년 성과자료집
1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 종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학이 자율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2024.2.20.)	[2–6], p.19
2	• **외국인 유학생 · 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할 경우 자기소개서 활용 가능 –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신설 (2024.7.9.)	[2–24], p.37

- 글로벌 교육분야의 규제개선은 국내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자율성과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대한 데에 의의가 있음
- 외국대학의 국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일부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여 운영을 준비하는 중임
-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학령기 학생과 구분된 별도의 선발 일정 운영도 허용되어, 이미 이화여자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는 2025년 9월 입학을 목표로 외국인 전형을 운영하는 중임
-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조치는 향후 학위 공동과정 운영, 해외 분교 확대 등 국제화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대학생 대상 대입 규제 완화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의 유연화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글로벌교육 분야 사례①

<table>
<tr><td>사례명</td><td>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 보장</td></tr>
<tr><td>학교명</td><td>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td></tr>
<tr><td>개선규제</td><td>■ [2-6]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에서 공동 교육과정 혹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 개정을 통해 운영</td></tr>
<tr><td>주요내용</td><td>• 부산외대, 동명대, 한양사이버대 등 3개 대학은 2024년 2월 20일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조항이 개정된 이후 학칙 개정을 통해 글로벌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 부산외대는 2025년 3월 1일 학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
<table>
<tr><th>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내용</th></tr>
<tr><td>1. [학칙]
제32조의8(외국인 편입생 합작 학과) 외국인 편입생을 위하여 합작 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14 〈신설〉

2. 〈신설〉</td><td>1. [학칙]
제32조의8(외국인 편입생 합작 학과) 〈삭제〉
제32조의 14(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우리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외국대학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체)</td><td>1. 2. 공통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양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마련</td></tr>
</table>
• 동명대는 2024년 8월 30일 학칙 개정을 통해서 외국대학이 본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이런 학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대학에 대한 동명대학이 구상·설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수출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table>
<tr><th>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th><th>개정내용</th></tr>
<tr><td>〈신설〉</td><td>제33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본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td><td>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td></tr>
</table></td></tr>
</table>

주요내용	• 한양사이버대는 2024년 5월 9일 학칙 제33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외국대학이 본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을 적용 ·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

개정 전 학칙(규정) 조문	개정 후 학칙(규정) 조문	개정내용
〈신설〉	제32조의2(외국대학의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13조의2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외국대학에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외국대학에 본교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수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 이처럼 부산외대, 동명대, 한양사이버대 등은 글로벌교육 관련 학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칙 개정 후 외국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음

글로벌교육 분야 사례②

사례명	외국인 유학생의 대입 규제 완화
학교명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개선규제	■ 외국인 유학생 · 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및 제41조 제3항 –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할 경우 자기소개서 활용 가능 –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요내용

-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학령기 학생과 달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2024.7.9.) 됨에 따라, 2025학년도 9월 입학을 위해 3~4월부터 입학 전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일정 〉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원서접수	2025. 3. 5.~4. 7.	온라인 원서접수 추천서 제출 입증자료 등	원서접수	2025. 4. 14.~6. 20.	온라인 원서 서류 제출
예비 합격자 발표	2025. 5. 2.		합격자 발표	2025. 7. 4.	
원본 서류 제출	2025. 5. 7.~5. 16.		등록금 납부	2025. 7.~8.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6. 13.	학부, 석사, 박사, 석 · 박통합	표준 입학 허가서 발급	2025. 7.~8.	학부
등록금 납부	2025. 7월중		OT	2025. 8.	

고려대 세종캠퍼스		
원서접수	2025. 4. 14. ~ 5. 7.	온라인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2025. 7. 4	
등록금 납부	2025. 7월 중	
표준 입학 허가서 발급	2025. 7월 중	등록금 납부 후
픽업 및 OT	2025. 8월 말	

- 이러한 제도 마련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대학의 국제화 효과도 기대됨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IV.

향후 과제

Ⅳ. 향후 과제

-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8개 분야 108건의 대학 규제개선은, 단순한 규정 완화를 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대학이 개별 여건과 조직 특성에 따라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이상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선은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역에 긴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현장 확산이 기대되고 있음
- 앞으로도 규제개선이 현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연계와 후속 지원이 요구됨

운영사례 축적 및 공유체계 구축	분야별 제도 활용 방식과 성과를 선도 대학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타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과 가이드를 개발해 확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유형별 대학 맞춤형 지원 강화	대학의 유형(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 등)에 따라 제도 도입 여건과 필요가 상이한 만큼, 제도 활용을 위한 행정·재정·컨설팅 지원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규제개선과 평가체계의 정합성 확보	대학이 제도 개선을 적극 활용하더라도 평가 지표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평가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함
후속 규제개선 과제의 체계적 발굴	현재 제도의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함

2022~2024

대학 규제개혁
현황 분석 자료집

발 행 일 • 2025년 7월

발 행 인 • 최동주

발 행 처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주 소 • (04309)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 나길 36
숙명여자대학교 인재관 308호

전 화 • 02-6325-3115~7

홈페이지 • www.sigg.or.kr

인 쇄 처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ISBN 979-11-989479-1-8

본 내용물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자료집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C2A03088815, '대학 규제개혁 성과 및 현장 적용 사례 연구'(윤종혁,손다운,김아람, 2025))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

비매품/무료

93370

9 791198 947918

ISBN 979-11-989479-1-8